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3개 총리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

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

제1조(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제2호라목”를 “제2호마목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36호제1항”을 “제3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후단 중 “제36호제1항”을 “제3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전단 중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(생략)	제7조(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(이하 이 조에서 “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서”라 한다)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해야 한다.	② ----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)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	제21조(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) ----- 제2호마목 -----

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”란 별지 제12호서 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 인서를 말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조합이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「 <u>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	4. ----- -- 「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 ----- ----- ----- --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조합의 해산 신고) ① (생략)	제6조(조합의 해산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·도지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	② ----- ----- <u>제36조제1항</u> ----- -----

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제7조(조합의 청산종결 신고)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「민법」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	-----. 제7조(조합의 청산종결 신고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제36조제1항----- ----- -----.
---	---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(생략)	제10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